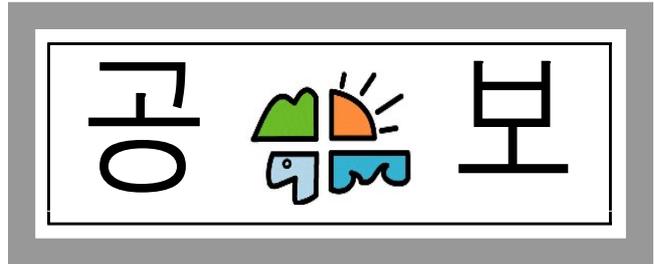


속 초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

제1262호 2020년 5월 11일(월)

조 례

- 속초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2

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20년 5월 11일

속 초 시 장

인

속초시 조례 제2750호

속초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속초시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시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재난”이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의 재난을 말한다.
2. “재난기본소득”이란 재난 발생 시 속초시민(이하 “시민”이라 한다)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.

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(시장의 책무) 속초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재난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과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지급대상) ①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「주민등록법」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속초시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의 피해범위, 시민의 소득·자산 등에 따라 지급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6조(지급방법)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재난기본소득의 지급기준, 지급금액, 지급일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③ 재난기본소득은 현금, 지역화폐, 상품권,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.

제7조(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) 시장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같은 종류의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각 교부조건에 따라 재난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.

제8조(지급중지 및 환수조치) ① 시장은 지급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난기본소득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.

1. 사망, 전출,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
2.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지 않거나 수령을 거부한 경우
3.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을 경우

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 것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